

의안번호	2213574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6.1.23.
추 계 번호	25B5587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공무원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억원, 2030년 1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억원(연평균 12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050	1,168	1,192	1,215	1,240	5,865	1,17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2026년은 11개월분에 한하여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공무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항) 1. 인력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에서 사업장·산업·업종·지역 등 다양한 노사 교섭 방식의 촉진과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연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원근로자들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됨(제2항)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함 가. 공무원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나. 공무원근로자들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제3항) 1. 공무원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원근로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2.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5항) 1. 기획재정부 제2차관·교육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차장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체·산업별 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제6항)	의무·재량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2항)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발전협의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제3항)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4	안 제10조(사무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5	안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	• 미대상 – 제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 공식추계
3	안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무직발전협의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두도록 하려는 내용임

- 1)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종전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제정안은 발전협의회에 분야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분야별협의회 설치 여부와 규모 및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0조(사무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채용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규모 및 채용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3조(수당 등)	○	• 공식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하되, 본 추계서의 작성 시점을 고려하여 2026년은 11개월분에 한하여 산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³⁾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이에 제정안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려는 내용임
 - 제정안은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11.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2.0	1.9	2.0	2.0	2.0	2.0

3)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안에 따른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안 제4조),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안 제13조) 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종전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되었던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장소 임차료 등 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2] 공무직위원회 운영비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운영비	—	1,250	959	911	187	—	827

주: 각 연도 예산 자료이며, 2020년은 예비비로 운영됨, 2023.3.31. 공무직위원회 종료.

자료: 고용노동부

- 2023년의 경우 3개월분(1~3월) 편성된 금액이므로, 추계기간 동안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비용은 3년간(2020~2022년) 공무직위원회의 운영비의 평균 값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제정안에 따라 종전의 공무직위원회 보다 위원 수가 상향 조정되어 수용비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억원, 2030년 1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억원(연평균 12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050	1,168	1,192	1,215	1,240	5,865	1,17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2026년은 11개월분에 한하여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